

(관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1991. 6. 1.

내부 02124-7066

(731-6156)

1991. 6. . .

수신처: 수신처 참조

제 목: 훈령, 예규통의 일제정비작업 추진지시

1. 국무총리지시 제10호('91.6.19)와 관련이
2. 시설화 차급 기관에서는 소관법령의 시행 또는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훈령, 예규, 지침 등을 발령, 운영함으로써 업무처리에 기여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르고 행정여건이 바뀜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도 이의 정비가 소홀하여 행정의 혼란은 물론 민원인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3.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대민행정의 천의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급기관의 훈령, 예규, 지침등의 일제정비작업을 추진코자 하니, 차급기관의 장은 법령 "훈령, 예규통의 일제정비지침"에 의거 '91.7.31까지 소관 훈령등에 대한 정비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법무담당관 참조 보고하기 바람.

첨 부: 훈령, 예규통의 일제정비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국 1-16, 서과 01-85, 서본부 01-04, 서사 01-47, 서구 01-22.

신	73	1204
73	1204	143
서	송운중	1-1

훈령·예규통의 일제정비지침

I. 정비 목적

- 시장화 차급 기관에서 소관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발령한 훈령, 예규, 지침등의 내용은 일반법령에 둘지 않게 국민생활에 직, 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훈령, 예규 등은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수시로 개선, 정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의 미흡으로 훈령, 예규 등의 효력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있어 대민행정의 불편을 초래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현행 각종 훈령, 예규 등을 일제정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II. 정비 대상

- '91.6.1 현재, 차급 기관 소관의 훈령, 예규 및 지침
- '91.6.1 현재, 차급 기관 소관의 지침, 지시중 훈령, 예규적 성질을 가진 것.

III. 정비기준

1. 폐지

- 훈령통의 균기법령 자체가 폐지 또는 실효된 경우 (1-1)
- 훈령통의 발령 당시 행정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혼격히 변화하여 통 규정들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2)
- 훈령통의 발령복적이 이미 탈성되어 더이상 적용할 여지가 없는 경우 (1-3)
- 훈령통의 효력의 종기가 도래하여 앞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1-4)
- 훈령통의 규정내용이 상위법규와 저촉되거나 중복되는 경우 (1-5)
- 훈령통을 발령한 이후 실제 적용실적이 없는 경우 (1-6)
- 조건의 성취 등 기타 원인에 의하여 훈령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1-7)

2. 통폐합

- 동일사항에 대하여 2개이상의 훈령통이 발령된 경우 (2-1)
- 훈령통의 규정내용이 새로운 훈령통과 중복되는 경우 (2-2)
- 연계적으로 반복되는 지침, 지시 등을 1개의 훈령 또는 예규화 조치 (2-3)

3. 개정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훈령통의 내용이 현실 달성을 어렵게 된 경우 협실에 맞춰 개선조치 (3-1)
-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훈령통의 내용에 개정이 필요한 경우 (3-2)
-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 훈령통의 내용에 있는 경우, 이를 직접 관계법령에 적상 반영 조치하고, 훈령통의 내용에서 이를 삭제 (3-3)
- 훈령통의 내용이 국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경우 통 규제를 완화조치 (3-4)
- 기타 훈령통의 내용이 복잡한 절차 또는 조건 등을 담고 있어 협실적으로 이해이 곤란한 경우 개선조치 등 (3-5)

IV. 행정사항

- 소관훈령통의 정비작업을 '91.7.31 까지 추진완료하고 그 결과를 별첨〈서식 1,2〉에 의거 작성하여 법무담당관 참조 보고할 것.
- 각 구에서는 소관훈령통의 정비작업이 완료되면 통 훈령통을 수록한 훈령, 예규집을 추록가제식으로 발간하여 배포함으로써 민원인 및 일선공무원 등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훈령·예규집의 발간형식 등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훈령 제 197호, "훈령·예규집발간 및 훈령·예규의 효율적인관리에 관한 특별지시" 참조)

* 별 침

(서식 1)

총괄표

○ ○ 부

(단위 : 천)

구분	정비작업전	정비작업후	정비실적			
			소계	폐지	통·폐합	개정
계						
훈련						
예규						
지침						

(서식 2)

(훈령, 예규, 지침) 정비 내역서

구분	정비유형	발령번호	발령년월일	전명	정비년월일	정비사유
훈령	폐지	○ 호				1 - 1
	통·폐합					2 - 1
	개정					3 - 1

※ 작성요령

1. 훈령, 예규, 지침 등을 자자 별개의 목록으로 작성
2. 사유란은 ■, 정비기준 중 해당코드를 기재
3. 통·폐합의 경우에는 조치결과 통합된 훈령등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흡수된 훈령등을 기재함.